

第116回(臨時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11月9日(金) 10時35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2. 2001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案) 作成의 件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2. 2001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案) 作成의 件 ..... 8面

(10時35分 開議)

○**委員長 安載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董連浩 財務局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올 한해도 저물어서 11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각종 여러 가지 사업계획의 마무리 단계에서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10월 29일, 30일까지 의원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지식과 평소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전문지식을 습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로서는 세계화의 물결에 합류하기 위한 대외경쟁력 제고와 지방화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그간에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이상과 현실 그리고 전체와 부분을 조화시키는 슬기로운 지혜를 터득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 지혜를 바탕으로 2002년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을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민생현안 업무를 우선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중요한 자리인 만큼 현명하신 선배 동료 위원께서 고견을 주셔서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景良 議事擔當主任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事擔當 金景良** 議事擔當 金景良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 10월 26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이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제117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0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景良 議事擔當主任!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提出)

(10時38分)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董連浩 財務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안녕하세요? 財務局長 董連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安載弘 委員長님! 그리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중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자면 기존 문화재 보호제도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학술적·역사적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것만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보호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동법이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위법령에 근거하여 등록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경감하여 문화재 보존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서 지정한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중로구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거 이미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향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조례개정(안)은 전국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임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우리 구에 소재하는 문화재 중 등록문화재로 지정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물은 총 14개이며 그 중에서 11개는 종교 및 공공시설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대상이 되고 나머지 3개의 시설은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지방세와 종합토지세가 각각 50%씩 감면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부과한 지방세 1,820만 4,000원의 50%에 해당되는 910만 2,000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록문화재를 보호관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민족적 문화재를 계승·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蔣昭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1년 10월 26일자 중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로 인해 상당한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옛날 국도극장과 같이 기념이 될 수 있었던 영조물 등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 3월 28일자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지정문화재 외에 등록문화재로 지정해서 법정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도 기존의 지정문화재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일정비율을 50%입니다마는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우리 구세감면조례 제8조 현황입니다. 현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국보 및 시 지정 문화재, 두번째는 시 지정 보존재산, 세번째는 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번에 신설해서 2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해서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는 안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문화재 지정 주체별로 지정형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형태에 따라서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유형문화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시 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해서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장에서 문화재를 분류한 근거법규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4조에서 보물, 2항에서는 국보로 지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 5조에서는 주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제6조에서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근거가 있고 7조에서는 주요민속자료, 8조에서는 보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시·도 지정입니다. 그것은 문화재보호법 55조에 되어 있고 금번 신설하게 되는 문화재등록입니다. 그 아래입니다. 문화재보호법 42조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내용은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등록 지정에 따라서 어떠한 행정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세를 감면해주는지 그 규제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형유지 의무가 지워집니다. 두번째는 관리·보존은 문화재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의무가 지워집니다. 다음 세번째

는 수리·보존도 문화재수리업자를 이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보호를 위한 각종 행정 명령을 받아들일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상 필요한 행정명령이라든가 소유변경, 관리자 변경할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라든지 훼손시에는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불이익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행정지원 규정을 살펴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은 문화재보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규정이라든가 수리·보존비용이 계산에 의해서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손실보상은 문화재보호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고 금번과 같이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지방세를 감면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금번 조례로 감면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선행조건이 되어 있으나 허가근거는 2001년 7월 26일자 행자부 세계 13400-186으로 허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에 따른 감면대상 재산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대상재산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세의 감면액은 경미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위원 있음)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지금 현재 14개 문화재 대상 중에서 11개가 종교 및 공공시설

물로써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3개 시설물은 어디어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위원장님! 답변을

○委員長 安載弘 財務局長님! 답변하세요.

○財務局長 董連浩 吳錦南委員長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했어야 도리입니다마는 제가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3개소로 지정이 예상이 되는 시설물은 신문로에 있는 대한교육연합회관, 원서동에 있는 공간사옥 현대건물 바로 옆에 인접해있습니다. 그리고 청진동에 있는 청일여관 3개소가 향후에 지정문화재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長 그러면 지주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문화재를 등록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는 전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나 이러한 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해서 등록이 되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長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 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長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金福同委員長님! 질의해주시시오.

○金福同委員 董連浩 財務局長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곽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죠? 성곽이.

○財務局長 董連浩 동대문하고 인접해있는 성곽을 말씀하십니까?

○金福同委員 그렇습니다. 거기가 종로구에 성곽이 동대문쪽도 있고 서쪽으로는 무악동에 성곽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죄송합니다마는 문화재의 구

체적인 내용은, 다른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金福同委員 한가지 묻겠습니다. 새삼 느끼니다마는 우리 석과정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오늘사 알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할에 계시는 존경하는 玄壽漢委員長님도 그 지역이시고 安載弘委員께서도 많이 얘기하시던데, 석과정을 얼마 전에 들려보니까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이 파손되고 그랬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관리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우리 종로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로부터 어떤 경고를 먹는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파손되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해놨는데 문화재의 가치성이 없잖아요? 문화재가 어떻게,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종로5·6가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성곽 주변에 층신동에 주택문제라든가 건설할 때 엄청난 제재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성곽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석과정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파손시켜'가지고 주택을 짓고 건설하고 이런 데도 아무런 이상 없이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알고 계시죠?

○財務局長 董連浩 委員長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金福同委員님께서 석과정 관리 그리고 성곽관리가 소홀함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문화재관리는 우리 구청 어디에서 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행정관리국 문화진흥과에서 합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安載弘 李炯述委員長님! 질의하십시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長입니다. 향후 문화재로 지정해보겠다는 이 3개소 청일여관, 공간사옥 그리고 신문로에 뭐라고 하셨죠?

○**財務局長 董連浩** 대한교육연합회관 줄여서 교육회관이라고 부르는 건물입니다. 새문안교회 바로 인접해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청일여관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어떤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서 보존적 가치가 있는

○**李炯述委員**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력을 서면으로 주시고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李炯述委員** 공간사육은 어떤 뜻으로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겁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지정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별도의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종로구 관내에 정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집행부 종로구청에서 역사의 아주 소중한 곳을 발굴해서 찾아서 문화재청에 올리든 해야 될 일이지 서울시에 맡겨놓고 문화재청에 맡겨놔서 우리 역사적으로 뜻 있는 곳을 소외시켜서는 안되거든. 서울시 지정 문화재의 이준규 가옥이 가회동에 산마루턱에 있습니다. 이 마빌딩 이준규 회장을 몇번 만났던 대담 속에 자기 건물이 뭐가 뜻이 어떻게 해가지고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됐는지 모르겠다 집행부인 그 얘기를 합니다. 종로관내에 우리 역사에 가장 소중한 곳이 안국동에 있는 선학원이라는 곳이 포교원이 있습니다. 안국동 옆에 윤보선 전 대통령 집 앞에, 이곳은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하에 그 고통을 받을 때에 선학원 굴을 파 가지고 그 속에서 독립운동을 한 역사적인 값어치가 있는 이러한 곳 지정을 서울시 담당 문화재과든지 전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곳 이런 곳을 왜 그런 곳을 찾아 가지고 뜻있는 곳이 헐어 없어지지 않도록 그 소중한 자리를 서울시가 못하고 문화재청이 못할 것 같으면 종로를 이끌어가는 종로구 집행부가 이러한 곳을 찾아 가지고 뜻 있는 곳 뭘 했든지 그런 역사도 널리 알려져 서울

시가 못하면 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거기에 있는 선학원 자체가 우리는 지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싫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값어치가 있을 것 같으면 찾아내 가지고 지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당연히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李炯述委員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3개소가 어떻게 해서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될 예정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선학원을 비롯한 소중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별도 필요한 조치를 해당부서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로관내의 여러 곳에 정말 소중한 우리 역사적인 값어치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천주교의 김대건 신부께서 그 어른이 유년시절에 태국을 지난 일이 있었답니다. 지나다가 하루 주무시고 간 자리에, 하루 자고 간 자리에다 이게 우리 전세계에 성인이 지나간, 불교국입니다. 카톨릭이 아닙니다. 세계 성인이 지나간 자리니 이것을 그대로 뒀서는 안되겠다 해서 큰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태국은 불교의 왕국입니다. 그런데도 교를 떠나서 성인이 지나간 발자취에다 성당을 짓는다는 걸 알고 아, 이게 바로 국가에서 할 일이구나. 종로관내에 중앙고등학교 앞에 있는 석정골우물이라고 보름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대건 신부가 지나가다가 물을 잡수시고 정말 좋은 물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많은 물을 잡수시고 이곳을 성지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곳이 여러 군데 되어 있거든. 이 신문에도 나고 그래도 이것을 종로구청은 소중한 역사자료를 방관하고 내버려둡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발굴을 해서 또 지나간 발자취의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술선수법해야 될 일이 지금 서울시가 청일여관이다 뭐다 해가지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뭔지도 깊은 저거도 모르고 거론됩니다. 이러한 것이 오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청일여관이든 공간사옥이든 이것을 기록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소명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게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심의하는 위원들은 이것을 빠가지고는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해올리는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 가지고는 후대에 정말 종로구청에서 올린 것이 잘했다고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선학원에 대한 역사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炯述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그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다가 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조례개정하고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개소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문화재청에서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등록이 된 연후에 만일 등록이 될 경우에는 등록된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토세를 50%씩 감면을 해주겠다는 그런 조례개정 내용이고 또 여기 특정문화재를 문화재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해서는 문화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행정관리국 문화재과로 하여금 관계 업무에 충실하도록 李炯述委員님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局長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 자체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이고 참 좋은 국가의 문화재를 잘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는데 이 좋은 법을 만들면 뭐 합니까? 거기에 꼭 필요한 곳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에

서는 법만 좋다 해가지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켜놓고 청일여관 뭐 어디어디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정말 지정해야 될 부분은 빠진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委員들! 전혀 모릅니다. 법을 다룰 때 이 부분도 집행부에 꼭 청을 드리고 싶은 점은 좋은 우리나라의 많은 법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도 시행하는데 미흡하면 그 법이 빛이 안 납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담당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이 법을 만들어놓고 종로관내에 정말 역사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지고 또 본 위원회에 지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서면재료를 각 위원님들께 나눠줘서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점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또 앞으로 거론되는 이 3개소도 얘기를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면 앞으로 이 청일여관이 역사성이 뭐가 있는지 그 공간사옥이 뭐가 되는지 또 교육연합회관이 뭐가 소중한 역사재료인지 우리 위원들이 알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법을 다룰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서면자료를 제출해주고 난 뒤에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李炯述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십시오.

**○玄壽漢委員** 난 委員長님께 질문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잠깐만이요. 지금 李炯述委員님이 지적하신 요지는 이래요. 여러분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나타난 문제가 결국은 구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결국 감세되는 부분에 대한 건데 감세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설명에 나와있는 대로 대상시설물 14개 중 11개는 종교 및 공공시설이고 3개는 일반 건물인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고 포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세감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왔다면 자료가 아주 잘 됐을텐

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도 역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문화진흥과하고 협조해서 가지고 자료를 財務局長님이 다 못하시니까 課長님이나 밑에 직원들이 局長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자료를 갖추세요.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세요.

○玄壽漢委員 委員長님이 그렇게 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기에서 우리 委員들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련에 대해서 질의가 분명히 나오리라 생각하면 財務局長님이 사전에 공부를 못하셨으면 文化振興課長을 대동했거나 또 위원장이 그걸 예측해서 文化振興課長을 참석시키게 하고 질문을 해야지 財務局長이나 課長이 委員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나올 게 하나도 없잖아?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겁니다. 당연히 해줘야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질의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그것도 추궁을 해봐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것도 준비 않고 財務局長한테 질의한들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委員長 安載弘 잘 알겠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러 委員님한테 물어 가지고 더 묻고싶으면 문화진흥과장이라도 와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 조례(안)은 마무리짓는 걸로 하십시오.

○委員長 安載弘 알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세요.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방금 玄壽漢委員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판에 문화재지정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갑론을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회의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우리 종로세수에 대해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적 역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보존해서 문화재로 등록해서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이런 질문은 문화진흥과 담당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고 어차피 財務局長이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려면 이번과 동을 표기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보고 이견 어느 동 몇번지에 있구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해서 국사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장충동인가 어디에서 우리 무악동으로 이전시킨 그걸 말하는 겁니까? 우리 局長님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죄송합니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우리 局長님도 이걸 모르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무악동 산12번지에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우리 무악동 국사당뿐만 아니라 국가 지정문화재라든지 등록문화재를 다음에 우리 문화진흥과장과 협의해서 이런 거는 동명과 지번을 명시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玄壽漢委員님이나 李炯述委員님 질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자료가 준비가 안됐고 그 다음 등록문화재가 됐든 지정문화재가 됐든 또는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지정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도 여러분께서 좀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내셨더라면 좀더 심의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오히려 준비를 충분히 하신 데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렸을텐데 그런 게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다음에 회의가 있을 때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더 질의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委員께서는 토론하  
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玄壽漢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財務局長님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할 때 답변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  
려 나오시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 과장이나 전문위  
원을 대동하고 나오셔야지 그냥 나오시면 되겠어  
요? 앞으로는 막힐 것 같으면 관련 과장이나 누  
구를 대동해서 대신 답변토록 해주셔야지 문화재  
관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 나오셔 가지  
고 거기에 답변하시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  
요. 그리고 구세감면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해줘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  
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  
다.

(11時12分 會議中止)

(11時48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載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2. 2001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案) 作成의 件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재무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委員長이  
幹事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해드  
린 2001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러면 吳弼根委員! 나오셔서 작성한 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吳弼根委員 財務建設委員會 幹事 吳弼根입니  
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 재무건설위  
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  
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서  
울특별시중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재무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 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통제로 규정  
전반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1  
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재무국, 도시  
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및 19개 동사무소입  
니다. 감사반은 安載弘 委員長 外 7名으로 편성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  
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합니다.

(參照)

### 2001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吳弼根 幹事!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할게요. 맨 뒷쪽 증인출석  
의결 이것도 같이 포함되지요? 그런데 지금 출  
석대상을 우창건설 대표 송명수하고 현장대행인  
강준우로 했는데 거기다 두 사람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권영준씨하고 권이섭씨를 추가로 증  
인출석 요구를 해야겠어요. 委員님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  
115회 임시회때 재무건설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吳弼根幹事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사

가 부실하고 야간공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사람은 위원님한테 공사 도급금액이 70%에 불과해서 공사비가 남지도 않는데 말이지 이렇게 공사해서 되겠느냐 하는 위원들한테 반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전혀 하도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공사는 우창건설 대표 송명수가 수주를 해가지고 현장대리인 강준우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권이섭씨란 사람하고 권용준이란 아들이 공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이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 위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해서 토목과나 건설교통국 공사와 관련지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우창건설 대표 송명수하고 강준우는 이미 증인 출석요구를 했고 이게 이번에 돼야 되는데 권용준씨하고 권이섭씨를 이번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네. 玄壽漢委員님!

○玄壽漢委員 여기는 7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일간이니까 어느 게 맞아요?

(○專門委員 蔣昭秀 議席에서 - 법적으로는 7일간인데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吳弼根 幹事!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네. 吳弼根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吳弼根委員 吳弼根委員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전문위

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교환으로 효율적인 안이 계획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증인출석 요구(안) 중에서 우창건설 권용준과 권이섭을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弼根委員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吳弼根委員의 수정동의(안)의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2001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吳弼根委員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해서는委員長과 幹事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 회의에 안전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종료의회의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9分 散會)

○出席委員 8人

安載弘 吳弼根 吳錦南 玄壽漢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金福同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財務局長 董連浩  
稅務1課長 趙朝翼

